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구동축전지(핵심장치등) 안전성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는 삭제하고, 안전성인증의 취소 대상이 되는 결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 신설(안 제40조의21 제3항)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의 취소 요건이 되는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결함의 발생 횟수를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 결함의 유형별로 나누어 명시

나.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취소 제외 대상 명시(안 제40조의21 제4항)

구동축전지의 결함 중 안전성인증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결함의 종류를 명시

다.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 삭제(안 제50조 제1항 제4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로 상항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관련 근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23. ~ 5.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1의 제목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를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핵심장치등으로 인해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핵심장치등의 결함으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한 결함(제1호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핵심장치등의 결함(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한다)이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④ 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결함

2. 단순 정보 표시 결함,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 결함, 주행 안전과는 무관한 통신 결함, 배터리 성능 및 안전과는 무관한 외부 부품의 손상 결함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의21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핵심장치등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21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규정한 결함의 발생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확인된 결함에 한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1(<u>핵심장치등의 안전성 인증 표시</u>) ①·② (생 략)	제40조의21(<u>핵심장치등의 안전성 인증 표시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본문에서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횡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u>”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u>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핵심장치등으로 인해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u> 2.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u>핵심장치등의 결함으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한 결함(제1호를 포함한다)</u>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u>핵심장치등의 결함(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한다)</u>이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신 설>

제50조(자료의 제공)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제외

④ 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결함

2. 단순 정보 표시 결함,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 결함, 주행 안전과는 무관한 통신 결함, 배터리 성능 및 안전과는 무관한 외부 부품의 손상 결함

제50조(자료의 제공) ①-----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동축전지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
한 자료

가. 구동축전지의 용량

나. 구동축전지의 정격전압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
칙」에 따른 구동전동기
(이하 “구동전동기”라 한
다)의 최고출력(구동축전
지를 갖춘 자동차를 판매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마.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

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
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